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강동길 의원
- 나. 의안번호: 제3130호
- 다. 발의일자: 2022. 3. 10.
- 라. 회부일자: 2022. 3. 16.

2. 제 안 사 유

- 최근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무공해 차량인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며, 서울시 또한 온실가스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25년까지 전기차 27만대를 보급할 계획임.
- 그러나 서울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 구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충전시설 부족이 꼽혔고, 충전구역에서 주차 관련 각종 민폐 행동이 발생해 다른 이용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및 주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확충·강화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 요 내 용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충전시설 등의 정보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신설).
-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시책과 추진실적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4항 신설).
- 다.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 및 임대료 경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시의회 동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 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을 규정함(안 제7조의2).
- 마.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수, 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7조의3, 안 제7조의4).
- 바. 충전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5 신설).
- 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 신설).
- 아.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및 주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강화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022.1.28.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안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구역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확대·강화하는 것임. 세부 내용은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을 기존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의 주차대수 시설로 확대하고,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을 기존 0.5~3%에서 2~5%로 강화하는 등 전기차 충전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범위의 최소치이므로, 향후 전기차 보급 동향을 고려하여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과 충전시설의 설치 의무 강화 주요 내용>

구분		기준	개정	
의무 대상 시설	①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총주차대수 100개 이상	총주차대수 50개 이상	
	②공동주택	총주차대수 100면 이상이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	총주차대수 50개 이상이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	
	③공영주차장	총주차대수 100개 이상	총주차대수 50개 이상	
의무 설치 비율	신축 시설	전용주차 구역	⇒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충전시설		
	기축 시설	전용주차 구역		총 주차대수의 공공부문 5%, 민간부문 2% 이상
		충전시설		

- 안 제3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시장과 시민의 책무, 안 3조의2제4항은 시책 수립·추진 및 추진실적 시의회 보고, 안 제7조는 충전시설 등의 지원 및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시의회 동의, 안 제7조의5는 충전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관련 사업의 확대, 충전 접근성의 향상, 업무 추진 절차의 정당성 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기축조 또는 축조 중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경과 규정을 부칙에 두어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1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향후 사업 지원, 충전료 징수 등 단순 업무의 위탁에서 벗어나 서울에너지공사의 설립 취지에 맞게 주도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상위 법령^A의 개정 사항 중 조례 위임 주요 조항>

법 제11조의3(국유재산 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생략)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영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생략)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령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생략)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A: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